

실업인정 제도 개정내용 안내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현행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개정	일반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정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을 차별화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 없이 ☎ 1577-7114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 1350

고용보험 모바일 →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취업희망카드 전자책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게

-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4호)
- ✓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
- ✓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
- ✓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은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
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수행
- ✓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불참/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지급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 가능



- ➔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인정(구직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했는지를 담당
자가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
- ➔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 등)이 아닌 재취업
활동은 횟수 제한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
- ➔ 여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
-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 ➔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 가능(다만,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



- ➔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대면 취업상담
- ➔ 수급자 누구든지 원하는 고용서비스(취업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최대한 지원
- ➔ 재취업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 대상자(반복·장기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집중 제공